

	기관의 장
선 람	

도보

제2644호 2010년 12월 10일(금)

규 칙

충청북도규칙 제2688호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칙 3

고 시

- | | |
|--|----|
| 충청북도고시 제2010-310호 영동산업단지 지구지정(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 | 4 |
| 충청북도고시 제2010-31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 6 |
| 충청북도고시 제2010-312호 제천시 탄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 7 |
| 충청북도고시 제2010-313호 음성군 금왕 공공하수도설치 변경인가 | 8 |
| 충청북도고시 제2010-314호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 9 |
| 충청북도고시 제2010-315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취소 고시 | 15 |
| 충청북도고시 제2010-316호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 16 |

공 고

- | | |
|--|----|
| 충청북도공고 제2010-842호 공시송달 공고 | 24 |
| 충청북도공고 제2010-843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등록 공고 | 28 |
| 충청북도공고 제2010-844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사항 공고 | 29 |
| 충청북도공고 제2010-846호 분묘개장공고(2차) | 30 |
| 충청북도공고 제2010-849호 사회복지법인 알지비복지재단 설립허가 공고 | 31 |
| 충청북도공고 제2010-850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 32 |

▣ 뒤쪽 이어서

회 람										
--------	--	--	--	--	--	--	--	--	--	--

공 고

충청북도공고 제2010-85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공고	33
충청북도공고 제2010-856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39
충청북도공고 제2010-857호 장암~지경간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보상계획	40
충청북도공고 제2010-858호 충청북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41
충청북도공고 제2010-862호 도시가스공급시설 추가공사 및 취소 계획공고	44

시 군 행 정

△ 고 시

청주시 고시 제2010-124호 청주 도시관리계획(복문로3가 엘리시아APT)지형도면 고시	46
충주시 고시 제2010-100호 충주 도시계획시설(공원호임근린공원)조성계획 지형도면승인 및 고사	48
충주시 고시 제2010-101호 충주 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실시계획 변경 안건 및 고사	52
청원군 고시 제2010-135호 청원 군관리계획(제2종자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3
청원군 고시 제2010-138호 하천정비 시행 계획(변경)의 고시	55
청원군 고시 제2010-139호 청원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57
청원군 고시 제2010-140호 오창저수지 주변 및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예정지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58
청원군 고시 제2010-141호 청원 차이나월드조성사업 예정지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고사	61
영동군 고시 제2010-63호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63

△ 공 고

청주시 공고 제2010-1036호 등록 공인 공고	66
제천시 공고 제2010-1295호 제천 도시계획시설(학교·세명대학교)사업 완료 공고	67
청원군 공고 제2010-1102호 군계획시설(소로279호, 80호, 90호)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68

기 타

△ 공 고

충청북도교육청공고 제2010-332호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0-447호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76

규 칙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12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충청북도 규칙 제2688호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칙 폐지규칙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 사유

-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서 규정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규칙 폐지

□ 폐지 내용

-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칙 폐지

고 시**충청북도 고시 제2010-310호****영동산업단지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충청북도 고시 제2009-139호(2009. 5. 1)로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영동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률 제7조의 4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영동산업단지

나.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산15번지 일원

다. 면 적 : 998,107m²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영동군의 지역경제 실태를 감안하고 최근 사회적·제도적인 여건의 조성으로 인해 산업단지 입지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충청북도 남부지역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산업지대를 구축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동군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영동군수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 (당초) 2007년 ~ 2010년

(변경) 2007년 ~ 2013년

나. 산업단지의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변경사유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하여 민간사업자 선정하여 공영개발에서 민관합동개발로 개발방법을 전환하려 하였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및 국내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기간 연장

6.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9. 수용 · 사용할 토지 ·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 주소(변경없음 - 충청북도 고시 제2009-139호)

10.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변경없음)

충청북도 고시 제2010-31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행 정 처 분 내 역

번호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1	충북-주택 2004-0013	(주)청운건설	홍길용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42-28번지	등록말소	-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주택법시행령 제14조
2	충북-주택 2006-0020	예원디엔씨(주)	김대훈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54-4번지3층	등록말소	-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주택법시행령 제14조

끝.

충청북도 고시 제2010-312호**제천시 탄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탄지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제천시장
- 주 소 : 충청북도 제천시 시청길 15(천남동)

2.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 공공하수처리시설 :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442-1 (650m²)
- 하수관거 :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일원

3.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 시설용량 : 60m³/일
- 처리방식 : JC-SBR공법

나. 하수관거

- 오수관로 4,760m

4. 예정처리구역

- 처리구역 : 0.010km²

5. 사업시행기간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신설공사 : 2010 ~ 20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비고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442-1	전	3,489	650	충주시 살미면 341 최경용	

7. 기타 관계서류는 충청북도 제천시 환경사업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충청북도 고시 제2010-313호**음성군 금왕 공공하수도설치 변경인가**

하수도법 제11조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금왕 공공하수도설치 변경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에 충인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수역의 부영양화 방지 및 수질을 보전하기 위함

2. 변경 인가내용**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음성군수
-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읍성읍 읍내리 621-1번지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314번지 일원
- 면 적 : 31,082m²

다.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공공하수처리시설
 - 명 칭 : 금왕 공공하수처리시설
 - 시설용량 : 6,000m³/일
 - 처리방식 : 생물학적 절소/인 동시제거법(BNR)

-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 시설용량 : 20m³/일

- 충인처리시설(변경)

- 당 초 : -
 - 변 경 : 신설(6,000m³/일)

라. 예정처리구역 : 1.4405km²**마. 사업시행기간 : 2010년 ~ 2011년(충인시설)****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변경없음****사. 기타 관계서류는 충청북도 음성군 상하수도사업소(☎043-871-2484)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충청북도 고시 2010-314호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청북도지사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329-4)

나. 조성목적

○ 청주권 공업육성으로 생산의 극대화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

다. 추진경위

- 1969. 3. 29 1차 공업지역 지정
- 1973. 5. 4 1차 지방 공업개발 장려지구 지정
- 1974. 8. 8 청주공업단지협의회 발족
- 1978. 4. 14 2차 공업지역 지정
- 1978. 8. 30 2차 지방 공업개발 장려지구 지정
- 1979. 7. 1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
- 1985. 9. 30 3차 공업지역 지정
- 1986. 7. 19 관리기관 지정
- 1987. 4. 14 3차 지방 공업개발 장려지구 지정
- 1989. 12. 30 부지 조성공사 완료
- 1990. 6. 30 입주업체 분양완료
- 1993. 6. 11 청주지방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충청북도 고시 제1993-109호)

- 1994. 10. 14 청주지방공업단지 관리기본체계 평정고시(충청북도 고시 제1994-118호)
- 1998. 10. 15 청주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체계 평정고시(충청북도 고시 제1998-133호)
- 2007. 3. 23 청주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체계 평정고시(충청북도 고시 제2007-53호)
- 2009. 8. 14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체계 평정고시(충청북도 고시 제2009-23호)

라. 분양현황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 성 기 간	조 성 기 간
		분 양	조 성	미 조성 소 계		
계	4,098	3,243	-	-	3,243	-
산업시설구역	3,027	3,027	-	-	3,027	-
지원시설구역	185	185	-	-	185	169~'89 청주시
공공시설구역	682	31	-	-	31	-
녹 지 구 역	205	-	-	-	-	-

(단위 : 천m²)

마. 입주현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적	(단위 : 개사, 천m ²)
	제조업	기 타	제	제조업		
계	262	22	284	3,003	240	3,243
'10. 11. 15 현재까지	262	22	284	3,003	240	3,243

(단위 : 개사, 천m²)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입지여건

시 설 명	내 용	총 면적	부 충 계획
도로	경부고속도로 청주 IC 6km (쪽 20m) 충부고속도로 서청주 IC 0.5km (쪽 35m)		
용수	수수도 : 제한없음 공업용수 : 196,000톤/일 공급		
전력	800,000㎾		
통신	1,700회선		
단지내 도로	22km		
환경	하수도시설 22km 폐수처리장 31,000톤/일 처리		
공동 이용 시설	공원 2개소		
복지 후생 시설	근로자임대APT 3동, 기숙사 1동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방향

- 입주기업체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고부가 가치 첨단산업 및 무공해 업종으로 점차 전환
- 수출증대와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의 자동화 추진, 신속한 정보제공, 인력의 원활한 수급, 근로자 복지 지원
- 공해 없는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천m ²)		(단위 : 천m ²)	
구 분	면적	구 분	면적
산업시설구역	4,098	산업시설구역	3,027

○ 산업시설구역내 특성용도

구 분	면적	자원비축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면적	20,248m ²		3,623m ²

(단위 : 천m²)

※폐기물처리시설은 산업시설용도와 복합용도 이용

※송정동 75-4번지(산업시설용도)내 일부를 폐기물처리시설용도로 복합용도 이용

2) 구역별 건축률 건축률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 산업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업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업주자 계를 부여한 지의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자원비축시설용도

-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건축물
- 폐기물처리시설용도
-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 나) 차원시설구역
○ 산림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반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신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농지구역 : 농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제작시설, 공연장 등)에 방지차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포함)

3)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 #1

다. 임종별 배치계획

1) 임종별 배치계획

구 분	현 체	변 척	2010년 11월 15일 현재
	전 체 수	변 척	업 체 수
계	264	3,027	264
소 계	262	3,003	262
음 식	14	350	14
상 유 · 의 복	17	361	17
목재 · 종이 · 출판	14	47	14
식 유 · 화 학	30	619	30
비 금 속	9	125	9
철	2	0	0
기	62	94	62
전 기 전 자	81	1,212	81
운 송 장 비	10	26	10
기	23	169	23
소	2	24	2
자 원 비 축 시 설	1	20	1
체 기물 처리 시 설	1	4	1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용도로 복합이용 가능

2) 배치기준

- 가) 업종별 불특화 배치 및 관련업종 인접 배치
나) 차원별 측지시설은 천연가스의 특성을 고려 산업단지 외곽에 배치
다) 입차입주자 및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업종별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 가능
-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 라. 임주관리계획
- 1) 임주업종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체조업
단, 공해유발 업종 및 용수대소비 업종 등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음.
 - 나)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 다)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
 - 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41122, 68112, 68122업종)
 - 단, 41122업종은 지식산업센터 건설 및 분양에 한함.
 - 마)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 단,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업종
 -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2업종(해당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일부를 임차하여 임주하는 경우에 한함)
 - 바)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지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차원비축시설
 - 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 단, 지정된 용도에 한하며,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삽입성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분뇨처리기,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 자) 임주업체 사업자임을 위하여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처)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2) 임주자·객

가) 산업시설 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임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집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영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단, 관리기관은 수료 및 산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사업을 제한할 수 있음)
-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폐기물 및 폐수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 해나자지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4)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650㎡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 인접(바로 옆놓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로 관여필지의 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이 경우 분할용지(1,650㎡ 미만) 매수업체는 다른 법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침여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음(위반시 임주자 약해지) ○ 지역경제 활성화, 임주업체의 구조조정 또는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임주절차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임주체 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임주계약을 체결

- 1) 목 표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협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관리
○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임주계약 또는 법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경에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임주계약을 체결하고 법정기간내 계약 미체결시는 임주자에게 양도도록 함.
○ 관리기관은 임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현수할 수 있고,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주계약을 해지함.

6) 지원시설 구역

- 1) 지원시설 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임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임주하는 자
○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임주우선 순위

-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업종
- 업종별 배치 계획에 부합되고 인근 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체
- 기존 임주업체와 계열화, 협력화를 위한 연관 업종
- 대도시 및 시내거주 국장으로 이전령 또는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
- 환경친화적 업종 및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 업종

4) 환경관리

- 임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방지율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산업단지내에서 배출되는 오 nhiễm,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에 적정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다) 안전관리

○ 풍수해 등 체계예방을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본부, 소방파출소 등을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체계적 협조체계 구축

○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거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비균형성과 단지 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체계이 수립되도록 협조체계 구축

라) 기반시설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비) 지원시설 운영 체계

1) 기본 방향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의료, 교육, 복지, 환경 등 지원시설 설치

2)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

○ 기존시설

- 사. 입주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 1) 공장설립 지원
 -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절차 대행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원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완료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공정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를 당해 신고인에게 통보
 - 2) 생산활동 지원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 수출증진 및 각종 해외시장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3) 창보제공 및 제품판매 일선 흥보
 - 입주기업체 생산활동을 위한 각종 기업정보 제공
 - 입주기업체 협회자 일간으로 업체 및 생산제품 홍보
 - 입주기업체 생산제품 판매활성화
 -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으로 신규거래선 발굴 및 거래일련 서비스
 - 4) 고용증대 및 근로자 복지시설
 - 인력수급을 위한 무료 직업알선창구 운영
 - 근로자종합복지관 등을 유치 근로자의 여기 활동지원 및 교육
 - 모범근로자 선발 표창 등 근로의무 고시를 위한 각종 사업 전개
 - 근로자 체육행사 지원(축구, 배너스, 블링 등)
 - 5) 기타 지원사업
 - 청주산업단지 환경발전협의회 및 관리부서장협의회 운영
 - 입주업체 에로시창·파악 및 문제기판 견의
 - 입주기업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 주유소 운영양정의 유류 공급 또는 임대
 - 공공시설 유지 관리

분 앙	야 별	설 치 구 역	규 모
제	제	20기소(216,525m ²)	19기소(185,315m ²)
소	제		
금 보	용 건 소 관 우 지 비 관 구 방 상 타	2개소(1,223m ²) 1개소(795m ²) 1개소(3,320m ²) 1개소(7,025m ²) 1개소(40,771m ²) 4개소(88,641m ²) 3개소(25,243m ²) 1개소(6,001m ²) 1개소(4,142m ²) 2개소(2,594m ²) 1개소(4,472m ²) 1개소(-1,090m ²)	
소	제	1개소(31,037m ²)	
환	경	공 공 시 설 구 역	1개소(31,037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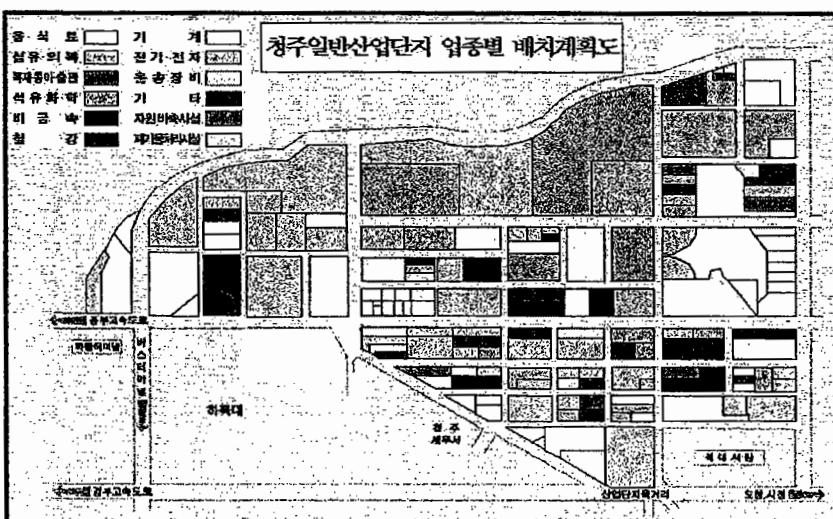
3. 승인조건

- 「산업정책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아래의 조건을 부가하여 승인함.
- 공장설립 등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세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서와 사전 협의하기 바람

"별첨 #1"



"별첨 #2"



충청북도 고시 제2010-315호**산림사업법인 등록 취소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을 취소하였기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 등록취소일자 : 2010. 12. 07.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산림사업의 종류	등록취소사유
2009-20	2009. 02. 24.	아송조경(주)	최경묵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77번지	도시림등 조성	등록증반납 (자진 취소)

충청북도 고시 제2010-316호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충주 이시진 묘소(忠州 李時振 墓所)」 등을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문화재지정 내용

가. 충주 이시진 묘소(忠州 李時振 墓所)

- (1) 지정종별 : 기념물 제147호
- (2) 문화재명 : 충주 이시진 묘소(忠州 李時振 墓所)
- (3)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산17-1
- (4) 소 유 자 : 전주이씨임영대군 효자공파 종회
- (5) 관 리 자 : 전주이씨임영대군 효자공파 종회
- (6) 수 량 : 일원(一圓)
- (7) 규 모 : 묘역 3,200m²
- (8) 조성연대 : 조선후기
- (9) 관리단체 : 전주이씨임영대군 효자공파 종회

나. 보은 김정 유허비(報恩 金淨 遺墟碑)

- (1) 지정종목 : 문화재자료 제80호
- (2) 문화재명 : 보은 김정 유허비(報恩 金淨 遺墟碑)
- (3)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179번지
- (4) 소 유 자 : 김효진 외
- (5) 관 리 자 : 경주김씨 이조판서공파 종중(慶州金氏 吏曹判書公派 宗中)
- (6) 수 량 : 1기
- (7) 규 모 : 비신 높이 168cm
- (8) 조성연대 : 숭정후삼 정사년(崇禎後三 丁巳年 / 1797)

다. 보은 운여역 충신각(報恩 弔祭殿 忠臣閣)

(1) 지정종목 : 문화재자료 제81호

(2) 문화재명 : 보은 운여역 충신각(報恩 弔祭殿 忠臣閣)

(3) 소재지 : 충북 보은군 마로면 한중리 402-3번지

(4) 소유자 : 파평운씨 금학공파 종증(坡平尹氏 鎏金公派 宗中)

(5) 관리자 : 운태익(尹泰億)

(6) 수량 : 1동(棟)

(7) 규모 : 현판 가로 170cm×세로 40cm

(8) 조성연대 : 1883년(고종 20년)

라. 청원 관정리 백석정(淸原 官井里 白石亭)

(1) 지정종목 : 문화재자료 제82호

(2) 문화재명 : 청원 관정리 백석정(淸原 官井里 白石亭)

(3)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날성면 관정리 산34-1

(4) 소유자 : 고령신씨백석정공파 종증

(5) 관리자 : 고령신씨백석정공파 종증

(6) 수량 : 1동(棟)

(7) 규모 : 정면 2칸, 측면 1칸

(8) 조성연대 : 1677년(숙종 3) 청간, 1927년 증건

2.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가. 충주 이시진 묘소(忠州 李時振 墓所)

(1) 지정종별 : 기념물 제147호

(2) 문화재명 : 충주 이시진 묘소(忠州 李時振 墓所)

(3) 소재지 : 충북 충주시 동향면 대전리 산17-1

(4) 보호구역 토지명세

소재지	토지의 표시			토지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m ²)	성명	주소	성명
동향면 대전리 산17-1	임	68,373	4,898.1	전주이씨전사 공파증증	산책면 양덕리 1646	김효진 외
계	1필지	68,373	4,898.1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80-2번지

나. 보은 김정 유허비(韓恩 金淨 遺墟碑)

(1) 지정종목 : 문화재자료 제80호

(2) 문화재명 : 보은 김정 유허비(韓恩 金淨 遺墟碑)

(3) 소재지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죽리 179번지

(4) 보호구역 토지명세

소재지	토지의 표시			토지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m ²)	성명	주소	성명
보은읍 성죽리	179	임야	383	383	김효진 외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80-2번지
계	1필지	383	383			

다. 보은 운여역 충신각(報恩 弔祭殿 忠臣閣)

(1) 지정종목 : 문화재자료 제81호

(2) 문화재명 : 보은 운여역 충신각(報恩 弔祭殿 忠臣閣)

(3) 소재지 : 충북 보은군 마로면 한중리 402-3번지

(4) 보호구역 토지명세

소재지	토지의 표시			토지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m ²)	성명	주소	성명
마로면 한중리	402-3	집중지	70	70	파평윤씨금 작공파종중	보은군 마로면 한중리 402-3번지
계	1필지	70	70			

라. 청원 관정리 백석정(淸原 官井里 白石亭)

(1) 지정종목 : 문화재자료 제82호

(2) 문화재명 : 청원 관정리 백석정(淸原 官井里 白石亭)

(3)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날성면 관정리 산34-1

(4) 보호구역 토지명세

소재지	토지의 표시			토지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m ²)	성명	주소	성명
날성면 관정리	34-1	임	4,364	820	신육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1
계	1필지	4,364	34,143	366	국유 (연설부)	

3. 지정사유

가. 충주 이시진 묘소(忠州 李時振 墓所)

- (1) 이시진 묘소(李時振 墓所)는 17세기 전반부터 20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전주이씨 일영대군 효문공파 6세손인 이시진 묘부터 13세손인 이명규 까지 조성되어 있다. 묘역에는 구릉의 능선을 따라 이시진(李時振), 이만재(李晚載), 이세언(李世彦), 이익령(李益齡), 이현창(李顯昌) 5대에 걸친 각 계 장손들의 묘소가 차례로 조성되어 있다. 이학령(李鶴齡), 이체홍(李澤弘), 이사원(李思遠), 이명규(李明圭)의 방계 후손들의 묘도 함께 있는데 능선부에서 약간 비켜 조성되어 있다.
- (2) 이시진 묘소(李時振 墓所)는 조성 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순조 12년(1812)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이시진 묘비(묘표)와 상석, 향로석, 계단석 등이 잘 남아 있어 조선후기 묘례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등장하는 이시진의 효행을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나. 보은 김정 유허비(報恩 雜碑)

- (1) 본 유허비는 18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이기는 하나 충북의 대표적 혈신 이자 유학자인 충암 김정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에 세워진 유허비이다. 그의 생애와 학문적 배경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이 비는 조선후기 대표적 문신인 성달 송환기 선생이 천하여 세운 현판이 원형대로 건립대상 인물의 역사적 비중과 비문을 지은 인물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보존 가치가 큰 유적이이다.

다. 보은 윤여익 충신각(報恩 忠臣閣)

- (1) 본 충신각은 조선 후기에 건립되고 1980년대 1차례 이전한 건물이나 관련 인물이 임진왜란 당시 지역의 대표 의병장의 한분이며 건물 내부에 건립 당시의 정려와 행장은 죽은 현판이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함이 타당하다.

라. 청원 관정리 백석정(淸原 宦井里 白石亭)

- (1) 조선시대 중기 기호지방의 대표적인 문인이며 가시문학(歌辭文學)의 거장인 신교(申喬)가 물 맑고 경치가 수려한 낭성면 관정리 흰 바위 위에 정자를 짓고 당시의 저명한 선비와 문인 그리고 조정 대신들과 학문을 교류하고 시문(詩文)을 겨루던 청자로서 역사적 가치가 끊 뿐 아니라,

당시에 상류층 사회의 명사들이 진주(晋州)의 촉석루(觸石樓), 관동지방의 총석정(總石亭), 삼척의 죽서루 등과 같이 전국의 명승지에 청자나 짓고 풍류를 즐기던 전통적인 건축양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조선 시대의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계속하여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4. 지정일자 : 도보 고시일

충주 이시진 묘소(忠州 李時振 墓所)

지정종목	기념물 第147號	
문화체육	충주 이시진 묘소(忠州 李時振 墓所)	
소재지	충북 충주市 豊良面 大田里 山17-1	
소유자	金州李氏謚贈大君 孝子公派 宗會 관리자	
수량	一團 규모	묘역 3,200m ²
조성연대	조선후기 관리단체	金州李氏謚贈大君 孝子公派 宗會
분류	유적/진조물 / 무덤 / 무덤 / 봉토묘	
지정일	20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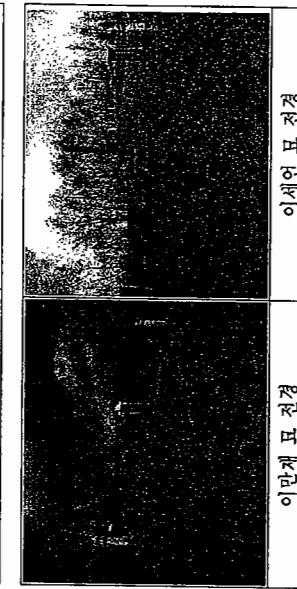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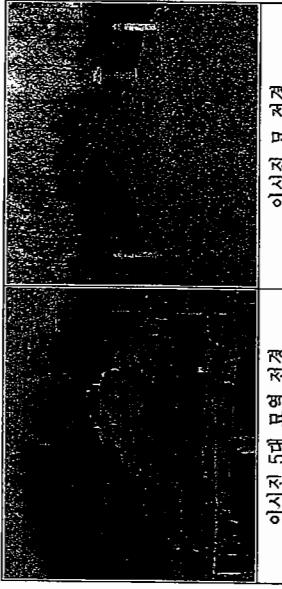
않고 상석前面에 '成均道士 全州李公 世彦之墓 配公人 竹山朴氏 耒左 墓坐'라 써

자하였다. 李世彦(1646~1708)은 이만제의 장자이다.

- 이억령 묘는 이세언 묘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床石, 香爐石(이상 조성 당시), 石碑, 望柱石(이상 2003년)등을 갖추고 있다. 무덤의 형태는 유품 문이며 척경 4m, 높이 1m정도이다. 분묘 조성 당시 석비를 세우지 않고 상석前面에 '通仕郎 全州李公 慶齡公墓 配罷人 金海金氏 耒左 墓坐'라 써자하였다. 李德輪(1672~1722)은 이세언의 장자이다.

- 이현충 묘는 이억령 묘 우측 아래(이하령 묘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2009년 부인 밀양박씨와 합장하면서 봉분을 세 조성하였다. 상석, 혼유석, 향로석, 석비, 망주석 등을 갖추고 있다(2009년 건립). 봉분은 유품문으로 척경 3m, 높이 1.2m 정도이다. 李顯昌(1695~1771)은 이억령의 장자이다.

○ 이시진 묘소(李時振 墓所)는 조선 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순조 12년(1812)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이시진 묘비(묘표)와 상석, 향로석, 계계석 등이 잘 남아있어 조선후기 묘제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 「忠州 신속산강행실도(東國新鐵三綱行實圖)」에 등장하는 이시진의 효행을 실시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 이시진(1578~1633)은 조선시대 「東國新編三綱行實圖」에 기록된 효자로서 국가로부터 정려를 받은 인물이다.
이시진 묘소(李時振 墓所)는 17세기 전반부터 20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전주에서 임영대군 효자구파 6세손인 이시진 묘부터 13세손인 이명규 묘까지 조성되어 있다. 墓域은 구릉의 능선을 따라 李時振 墓, 李晚載(이시진의 장자) 墓, 李世彦(이만제의 장자) 墓, 李德輪(이세언의 장자) 墓, 李顯昌(이억령의 장자) 墓, 5대에 걸친 계계·장손들의 묘소가 차례로 조성되어 있다. 李時振(이세언의 친자) 墓, 李濟弘 墓, 李思誠 墓, 李明生 墓 등 방계 후손들의 묘도 함께 있는데 능선부에서 약간 비켜 조성되어 있다.

○ 5대묘는 봉분과 석물(상석, 혼유석, 향로석, 석비, 망주석 등)을 갖추고 있으며 상석과 혼유석, 향로석 등은 조성당시의 석물이며 석비와 망주석은 대개 2003년 종종에서 일괄·건립한 것이다. 이시진, 이계홍 묘 석비는 당시의 것이다.
- 이시진 묘에는 石碑(2通), 望柱石, 雕遊石, 床石, 香爐石 등을 갖추고 있으며 석비 1점은 2003년에 건립하였으며 망주석도 이억령 세운 것으로 보인다.

무덤은 평면 사다리꼴 형태이며 가로 6m, 세로 6m, 높이 1.5m정도이다. 부인 전주 흥씨와 풍산 심씨를 합장하였다. 李時振(1578~1633)은 全州李公 路漫大君派 6세이다.

- 이만제 묘는 이시진 묘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床石, 香爐石(이상 조성 당시), 石碑, 望柱石(이상 2003년)등을 갖추고 있다. 무덤의 형태는 평면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가로 5.2m, 세로 8m, 높이 1.6m정도이다. 분묘 조성 당시 석비를 세우지 않고 상석前面에 「折衝將軍 行龍鑿節副護軍 全州李公 晚載之墓 配淑夫人 媵平尹氏 耒左 墓坐」라 써자하였다. 李晚载는 이시진(1625~1705)의 장자이다.

- 이세언(1646~1708) 묘는 이만제 묘 아래에 위치한다. 床石, 香爐石(이상 조성 당시), 石碑, 望柱石(이상 2003년)등을 갖추고 있다. 무덤의 형태는 평면 삼각형에 가까우며 가로 5m, 세로 6.5m, 높이 1.5m정도이다. 분묘 조성 당시 석비를 세우지

○ 이시진(1578~1633)은 조선시대 「東國新編三綱行實圖」에 기록된 효자로서 국가로

부터 정려를 받은 인물이다.
이시진 묘소(李時振 墓所)는 17세기 전반부터 20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전주에서 임영대군 효자구파 6세손인 이시진 묘부터 13세손인 이명규 묘까지 조성되어 있다. 墓域은 구릉의 능선을 따라 李時振 墓, 李晚載(이시진의 장자) 墓, 李世彦(이만제의 장자) 墓, 李德輪(이세언의 장자) 墓, 李顯昌(이억령의 장자) 墓, 5대에 걸친 계계·장손들의 묘소가 차례로 조성되어 있다. 李時振(이세언의 친자) 墓, 李濟弘 墓, 李思誠 墓, 李明生 墓 등 방계 후손들의 묘도 함께 있는데 능선부에서 약간 비켜 조성되어 있다.

○ 5대묘는 봉분과 석물(상석, 혼유석, 향로석, 석비, 망주석 등)을 갖추고 있으며 상석과 혼유석, 향로석 등은 조성당시의 석물이며 석비와 망주석은 대개 2003년 종종에서 일괄·건립한 것이다. 이시진, 이계홍 묘 석비는 당시의 것이다.
- 이시진 묘에는 石碑(2通), 望柱石, 雕遊石, 床石, 香爐石 등을 갖추고 있으며 석비 1점은 2003년에 건립하였으며 망주석도 이억령 세운 것으로 보인다.

무덤은 평면 사다리꼴 형태이며 가로 6m, 세로 6m, 높이 1.5m정도이다. 부인 전주 흥씨와 풍산 심씨를 합장하였다. 李時振(1578~1633)은 全州李公 路漫大君派 6세이다.

- 이만제 묘는 이시진 묘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床石, 香爐石(이상 조성 당시), 石碑, 望柱石(이상 2003년)등을 갖추고 있다. 무덤의 형태는 평면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가로 5.2m, 세로 8m, 높이 1.6m정도이다. 분묘 조성 당시 석비를 세우지

- 이세언(1646~1708) 묘는 이만제 묘 아래에 위치한다. 床石, 香爐石(이상 조성 당시), 石碑, 望柱石(이상 2003년)등을 갖추고 있다. 무덤의 형태는 평면 삼각형에 가까우며 가로 5m, 세로 6.5m, 높이 1.5m정도이다. 분묘 조성 당시 석비를 세우지

○ 이시진(1578~1633)은 조선시대 「東國新編三綱行實圖」에 기록된 효자로서 국가로

부터 정려를 받은 인물이다.
이시진 묘소(李時振 墓所)는 17세기 전반부터 20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전주에서 임영대군 효자구파 6세손인 이시진 묘부터 13세손인 이명규 묘까지 조성되어 있다. 墓域은 구릉의 능선을 따라 李時振 墓, 李晚載(이시진의 장자) 墓, 李世彦(이만제의 장자) 墓, 李德輪(이세언의 장자) 墓, 李顯昌(이억령의 장자) 墓, 5대에 걸친 계계·장손들의 묘소가 차례로 조성되어 있다. 李時振(이세언의 친자) 墓, 李濟弘 墓, 李思誠 墓, 李明生 墓 등 방계 후손들의 묘도 함께 있는데 능선부에서 약간 비켜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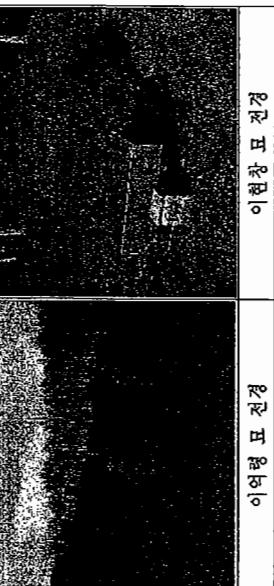
○ 5대묘는 봉분과 석물(상석, 혼유석, 향로석, 석비, 망주석 등)을 갖추고 있으며 상석과 혼유석, 향로석 등은 조성당시의 석물이며 석비와 망주석은 대개 2003년 종종에서 일괄·건립한 것이다. 이시진, 이계홍 묘 석비는 당시의 것이다.
- 이시진 묘에는 石碑(2通), 望柱石, 雕遊石, 床石, 香爐石 등을 갖추고 있으며 석비 1점은 2003년에 건립하였으며 망주석도 이억령 세운 것으로 보인다.

무덤은 평면 사다리꼴 형태이며 가로 6m, 세로 6m, 높이 1.5m정도이다. 부인 전주 흥씨와 풍산 심씨를 합장하였다. 李時振(1578~1633)은 全州李公 路漫大君派 6세이다.

- 이만제 묘는 이시진 묘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床石, 香爐石(이상 조성 당시), 石碑, 望柱石(이상 2003년)등을 갖추고 있다. 무덤의 형태는 평면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가로 5.2m, 세로 8m, 높이 1.6m정도이다. 분묘 조성 당시 석비를 세우지

- 이세언(1646~1708) 묘는 이만제 묘 아래에 위치한다. 床石, 香爐石(이상 조성 당시), 石碑, 望柱石(이상 2003년)등을 갖추고 있다. 무덤의 형태는 평면 삼각형에 가까우며 가로 5m, 세로 6.5m, 높이 1.5m정도이다. 분묘 조성 당시 석비를 세우지

보은 김정 유허비(報恩 金淨 遺墟碑)



지정종목	문화재자료 第80號		
문화체명	보은 김정 유허비(報恩 金淨 遺墟碑)		
소재지	忠北 韶恩郡 韶恩邑 肇足里 179番地	관리자	慶州金氏 壬智判書公派 宗中
소유자	김효진 외	비신 높이	168cm,
수량	一基	규모	정면폭 66cm, 두께 26cm
조성연대	崇禎後三丁巳年(1797)	관리단체	慶州金氏 壬智判書公派 宗中
분류	유적건조물 / 인물사전 / 인물기념 / 비		
지정일	2010.12.		

○ 총암(仲庵) 김정(金淨, 1486~1520)은 보은 성족에서 출생하여 1507년 문과에 정원 급제하여 정언(正言)·순창군수 등을 지냈으며, 폐비 선씨 부와 상소와 관련하여 파직되었다. 농자하여 부제학(副提學)·동부승지(同副承旨)·도승지(都承旨)·이조참판(吏曹參判)·대사헌(大司憲)·형조판서(刑曹判書) 등을 역임하였다. 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제주도에 암치되었다 사사(賜死)되었고 후에 복권된 뒤 영의정으로 추증되는 등 충복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 유허비 및 비각은 보은을 성족의 179번지에 위치하며 조선 종종 때의 학자이자 명신인 총암 김정이 출생하고 성장한 곳을 기념하는 비로 승정후상장사현崇禎後三丁巳年 / 1797년에 건립하였으며 비문은 조선후기 문신인 성달 송환기姓潭宋煥基가 지었다.

비각 내에는 충암 김정 선생의 비석과 함께 형님인 창암선생의 비석도 함께 있다. 비석은 화강암 체계로 기단, 비신, 가천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척면에는 '충암김 선생유허비(神轍金先生遺墟碑)'라고 읊자되어 있고, 척측면에서 글자를 새기기 시작하여 우측면에 건립일자까지 새겨 넣었으며 끝부분에 승정후상장사현崇禎後三丁巳年이 기록되어 있어 1796년에 건립된 비석임을 알 수 있다. 기단은 척단식 이중기단으로 흙을 파고 비신을 세웠으며 그 위에 가첨석을 놓은 형태로 가첨석은 풀자지봉형태의 지붕모양으로 당초문 등으로 장식되었다.

비각은 척면 1칸 측면 1칸의 이익공침처마 팔작지붕으로 기둥은 하부는 석주를 두고 상부는 목제로 구성하였으며, 창방과 평방사이에 공포를 두고 벽면은 살창으로 처리하였다. 현제 비각 척면에는 1973년에 건립한 형남 창암선생의 비석이 함께 있다.

○ 본 유허비는 18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이기는 하나 충북의 대표적 명신이자 유학자인 충암 김정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에 세워진 유적비이다. 그의 생애와 학문적 배경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이 비는 조선후기 대표적 문신인 성달 송환기 선생이 친하여 세운 비석으로 건립대상인물의 역사적 비중과 비문을 지은 인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보존가치가 큰 유적이다.

보은 윤여익 충신각(報恩 尹汝翼 忠臣閣)

지정종목		문화재자료 第81號	
문화재명		보은 윤여익 충신각(報恩 尹汝翼 忠臣閣)	
소재지		忠北 錦陽郡 馬老面 閣中里 402-3番地	
소유자	坡平尹氏 錦左公派	관리자	윤태익(尹泰德)
수량	一棟	규모	15.20m ²
조성연대	1883년(고종 20년)	관리단체	慶州金氏 吏曹判書公派 宗中
분류	유적·건축물 / 인물시전 / 인물기념 / 사우		
지정일	2010.12.		

○ 이 충신각은 조선 선조 때 의병으로 활동하다 순직한 윤여익(尹汝翼; 1548~1592)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윤여익은 종봉 조현선생의 문인으로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스승을 따라 의병에 참가하여 청주성 탈환에 공을 세웠고 금산싸움에서 순국하였다.

1883년(고종 20) 선생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충신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정면 2.3m, 측면 2.0m)의 점치마 팔작지붕 건물로서 지붕부세는 최초 건립 당시 부체를 사용하였으나, 하향식 및 주춧는 이설한 뒤 건물을 높이는 과정에서 콘크리트제질로 시공하였다. 내부에는 '忠臣旌閭 坡平尹汝翼之閣 光緒九年 八月十九日啓'라는 현판과 행장(行狀)을 기록한 현판이 걸려 있다.

○ 1883년(고종 20년)에 정려가 해사되었으며 조종봉 후을사(趙重峰 後栗祠) / 총청록도 기념물 제15호에 제작되었다.

○ 마로면 한중리 마을회관 박온관에 위치하며, 상주방향 지방도번에 위치한다.

○ 바로면 한중리 마을회관 박온관에 위치하며, 상주방향 지방도번에 위치한다.

○ 바로면 한중리 마을회관 박온관에 위치하며, 상주방향 지방도번에 위치한다.

○ 바로면 한중리 마을회관 박온관에 위치하며, 상주방향 지방도번에 위치한다.

○ 바로면 한중리 마을회관 박온관에 위치하며, 상주방향 지방도번에 위치한다.

○ 바로면 한중리 마을회관 박온관에 위치하며, 상주방향 지방도번에 위치한다.

○ 바로면 한중리 마을회관 박온관에 위치하며, 상주방향 지방도번에 위치한다.

○ 바로면 한중리 마을회관 박온관에 위치하며, 상주방향 지방도번에 위치한다.

○ 바로면 한중리 마을회관 박온관에 위치하며, 상주방향 지방도번에 위치한다.

○ 바로면 한중리 마을회관 박온관에 위치하며, 상주방향 지방도번에 위치한다.

○ 바로면 한중리 마을회관 박온관에 위치하며, 상주방향 지방도번에 위치한다.

○ 바로면 한중리 마을회관 박온관에 위치하며, 상주방향 지방도번에 위치한다.



청원 관정리 백석정(淸原 官井里 白石亭)

지정종목	문화재자료 第22號		
문화체계별	청원 관정리 백석정(淸原 官井里 白石亭)		
소재지	忠北 淸原郡 鎮城面 官井里里	신34-1番地	
소유자	고령신씨백석정공파 종종	판리자	고령신씨백석정공파 종종
수량	一棟	규모	9.98㎡
조성연대	1677년(숙종 3) 창건,	판리단체	고령신씨백석정공파 종종
분류	유적전조물 / 주거생활 / 주거건축 / 가옥		
지정일	2010.12.		

- 조선 숙종3(1677년)에 東部主簿를 지낸 白石후 신교(申灝 ; 1641~1703년)가 세운 고령신씨의 정자이다. 현재의 정자는 1927년 후손들이 중건하였다.
 관정리 마을 앞 도로를 따라 마을 물자력을 높이기 위해 마을 퇴선 주택 절벽에 바위를 의자하여 자리하고 있다. 지형상 무편에 산을 두고 북향하여 바위에 입자하여 있으며, 백석정 아래에 농은 하천이 흐르고 있다. 건물로의 진입은 철책 사이의 틈을 걸을 때 약 10m 정도 들어가면 일각대문이 놓이고 그 안에 백석정이 자리한다.
- 신교(申灝)는 1677년 낭성현(한강의 상류)의 正齋(淸溪에 매들린 높은 바위에 백석정을 창건하여 自號로 白石후이란 명명하고, 그곳에서 농대의 養生과 瀟洒지방의 유명한 文士들과 문작파詩韻을 짓고 교류하였다. <白石亭 遺稿>에는 신교가 지은 國文歌辭 2篇章 時闕 22首, 遺詩 3篇이 실려 있다.
- 1690년 朝廷의 蘭馨를 받아 官職에 出仕하여 7개 부署를 맡았으며, 1699년 東部主簿를 끝으로 관직을 떠나 경기도 廣州 岐川 邊에 정자 臨鏡亭을 건립하였다. 1701년 평주에서 고향인 낭성면 穩井으로 은퇴하였고, 1703년 향년 63세로 별세하였다.
- 5랑가 소로수정침으로 내부는 통진에 쭈마루를 걸고 통난간을 둘렀다. 전제적으로 구조부체가 세워져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다. 베면 가운데 기둥은 치득하지 않은 차연목을 세워 놓아졌다. 판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 조선시대 증기 기호지방의 대표적인 문인이며 가시문학(歌辭文學)의 거장인 신교(申灝)가 물 맑고 경치가 수려한 낭성면 관정리 흰 바위 위에 정자를 짓고 당시의 지명한 선비와 문인 그리고 조정 대신들과 학문을 교류하고 시문(詩文)을 쟁투한 정자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아 아니라, 당시에 상무총 사화의 명사들이 전주(晋州)의 축석루(蓄石樓), 관동지방의 충석정(淸石亭), 삼척의 주서루 등과 같이 전국의 명승지에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전통적인 견축양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조선시대의 문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계속하여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공 고

충청북도 공고 제2010-8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아래와 같음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5. 공고기간 : 2010. 12. 2 ~ 2010. 12. 15(14일간)
6. 의견 제출일 : 2010. 12. 29
7. 처분(예정) 대상자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예정된 처분내용	처분사유
창조건설(합)	충북-주택 2005-0003	임순애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227-1 상가1호	등록 말소	등록 기준 미달
미랜드건설(주)	충북-주택 2005-0034	박희복	충주시 용산동 160번지	등록 말소	등록 기준 미달
영진개발	충북-대지 2008-0009	황유주	충주시 교현동 456-9번지	등록 말소	등록 기준 미달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043-220-447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유의사항>

의견제출(청문)기한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 미제출시에는 추가 의견진술 기회부여 없이 우리 도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건축디자인파 -
 시 행 일 : 2010. 12.
 수 신 : 청조건설(한) 대표 임순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고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건축디자인파 -	시 행 일 : 2010. 12.																												
수 신 : 미랜드건설(주) 대표 박희복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고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소																												
2. 담당자	성명(영문) : 총무-주택 2005-0003 청조건설(한) 임순애																												
주 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부동 227-1번지 하은비치아빌상가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2 - 등록사업자는 등록(증여 미달/사유실) 되어 영업정지(3개월)이나 폐지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table border="1"> <thead> <tr> <th>제</th><th>기관명</th><th>충청북도</th><th>부서명</th><th>건축디자인과</th><th>담당자</th><th>장기우</th></tr> </thead> <tbody> <tr> <td>주 소</td><td>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89)</td><td>전화번호</td><td>043-220-4472</td><td>전화번호</td><td>043-220-4472</td><td></td></tr> <tr> <td>체</td><td>체자우편</td><td>ilwoo1457@korea.kr</td><td>모사전송</td><td>043-220-4459</td><td>모사전송</td><td>043-220-4459</td></tr> <tr> <td>기 한</td><td></td><td>2010. 12. 29일까지</td><td></td><td></td><td>2010. 12. 29일까지</td><td></td></tr> </tbody> </table>	제	기관명	충청북도	부서명	건축디자인과	담당자	장기우	주 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89)	전화번호	043-220-4472	전화번호	043-220-4472		체	체자우편	ilwoo1457@korea.kr	모사전송	043-220-4459	모사전송	043-220-4459	기 한		2010. 12. 29일까지			2010. 12. 29일까지	
제	기관명	충청북도	부서명	건축디자인과	담당자	장기우																							
주 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89)	전화번호	043-220-4472	전화번호	043-220-4472																								
체	체자우편	ilwoo1457@korea.kr	모사전송	043-220-4459	모사전송	043-220-4459																							
기 한		2010. 12. 29일까지			2010. 12. 29일까지																								
	충청북도지사																												

[앞쪽]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p>문서번호 : 건축디자인파 - 시 행 일 : 2010. 12. 수 신 : 영진개발 대표 청유주 의1인</p> <p>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고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발급</p>	
<p>2. 당사자 성명(영어) 총무·주택 2008-0009 협진개발 청유주 의1인 주 소 충북 음주군 교현동 456-9번지</p>	
<p>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2 - 등록사업자는 등록기준에 미달(사무실)되어 영업정지기간(3개월)이 걸리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을</p>	
<p>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발급</p>	
<p>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 2</p>	
<p>6. 의견제출 기관명 충청북도 부서명 건축면허인과 담당자 청일우 주 소 청주시 삼남구 상당로 82(문화동 89) 전화번호 043-220-4472 처 분 우편 주 소 liwoo1457@korea.kr 모사전송 043-220-4459</p>	
<p>기 한 2010. 12. 29일까지</p>	
<p>충청북도지사</p>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국가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슬·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은 일종합 중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셔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답장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국화체에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악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치분의 제목

2. 당시자

3. 주 소

4. 기 태

3. 의견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서명 또는 인))

성명

충청북도지사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10-843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등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제2001-1-충청북도 15호	충북자연사랑유아교육연구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756 LH타워 3층	지옥정 우성자	2010. 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기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영유아기 환경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 영유아기 환경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 환경교육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환경교육 등 	043-234-8874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신규등록
제2000-1-충청북도 4 2호	바르게살기운동과산군협의회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86-4	홍종국	2000. 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게살기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 · 바르게살기운동 과제의 선정과 홍보 ·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연구 ·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등 	043-833-8070	자치 행정과 변경등록(소재지)

충청북도 공고 제2010-844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사항 공고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허가번호 : 충청북도 2010년 제1호
2. 법인명칭 : 사단법인 충주농촌문화체험협회
3. 소재지 : 충북 충주시 안림동 52-16번지
4. 대표자 : 김만영
5. 설립목적 :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기여
6. 설립허가일 : 2010년 12월 1일

충청북도 공고 제2010-846호

분묘개장공고(2차)

증평~청안간 도로확포장공사 구역에서 발견된 분묘의 처리를 위해 장사동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안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안에 접수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묘의 위치	기수	개장사유
충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산33-4번지(임)	6기	증평~청안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
충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산32-11번지(임)	1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310-1번지(전)	2기	

2.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개장(개장유골 봉안)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산84번지 오창공원묘지 봉안당
-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4. 공고기간 : 2010. 11. 5. ~ 2011. 2. 5.(3개월)

5. 신고처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도로과 (☎ 043-220-4233)

6. 신고할 때 제출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충청북도 공고 제2010-849호

사회복지법인 알지비복지재단 설립허가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허가번호 : 충청북도 제2010-2호
2. 법인명칭 : 사회복지법인 알지비복지재단
3. 소 재 지 : 충북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294-2
4. 대 표 자 : 강 유 식(1948. 11. 3)
5. 설립목적 : 저소득층 아동중심으로 사회적 소외된 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복지 증진에 기여
6. 사업의 종류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사회적약자 등에 대한 지원
7. 설립허가일 : 2010년 12월 3일

충청북도 공고 제2010-850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충청북도 공인조례 제8조(공인의 등록·재등록)에 의거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동 조례 제9조(공고)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 등록사유 :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운영 위한 전자이미지등록
- 공인의 최초사용일 : 2010. 12. 6.
- 신조 공인명 및 인영

등록공인명	인영	규격 및 서체
충청북도 소방관징계위원회위원장		한글전서체 (가로 2.4cm x 세로2.4cm) 정사각형

충청북도 공고 제2010-85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①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4호('08.10.08)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4호('07.04.19),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72호('07.6.1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30호·제2008-131호('08.10.02)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추부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수리 및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19호, 2010.12.03)되었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i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제1조 (열람기간 및 장소)

- ① 열람기간 : 공고한 날부터 30일간
- ② 열람장소
 - 가. 345kV 신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 충주시청 (경제과, 전화번호 : 043-850-6044)
 - 나. 154kV 추부변전소 및 관련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 옥천군청 (경제과, 전화번호 : 043-730-3633)

제2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1. 345kV 신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 ① 사업명의 명칭 : 345kV 신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성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③ 변경사유 : 토지활용 제고 및 변전소 인·출입 위치변경으로 인한
 철탑위치 변경(신규필지에 대한 토지사용등의 원인)

④ 변경내역
 가. 선로길이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21,721 km	22,004 km	0.288 km 증가

나. 지자율수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61 기	63 기	2 기 증가

다. 사업면적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533,346m ²	542,791m ²	9,445m ² 증가

라. 사업기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2008. 9 ~ 2011. 4	2008. 9 ~ 2013. 6	26 개월 증가

⑤ 토지의 증감표

(단위 : m²)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지목	시유지 국·공유지	국·공유지	비고
임	248,076	223,235	+ 8,850
담	28,012	76	0
도로	487	7,260	7,747
구역	1,000	1,465	2,465
전	9,830	-	9,830
허천	1,070	12,309	13,379
체방	-	252	252
대지	48	48	48
목장	-	-	595
미동기	-	226	226
계	288,523	244,823	9,445

⑥ 농지변입 변경내역 : 변경 없음

⑦ 산림면입 변경내역
 가. 철탑부지

지목	소재지	부지 면적		비고
		변경전	변경후	
임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산02	180	180	-
임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산 37	247	-	247m ² 감소
임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산 36	0	486	486m ² 증가
임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산36-1	0	183	183m ² 증가
임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산37-1	0	174	174m ² 증가
계		427	1,023	596m ² 증가

나. 선하부지

나. 선하부지

지목	소재지	규모		비고
		변경전	변경후	
임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산100	1,670	1,807	137m ³ 증가	
임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산102	6,308	7,397	1,489m ³ 증가	
임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산50-10	7,952	8,051	99m ³ 증가	
임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회곡리 산 36	2,481	4,089	1,608m ³ 증가	
임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회곡리 산 37	6,833	0	6,833m ³ 증가	
임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회곡리 산62	0	7,983	7,983m ³ 증가	
임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회곡리 산26-1	0	1,336	1,356m ³ 증가	
임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회곡리 산37-1	0	2,415	2,415m ³ 증가	
계	25,244	33,498	8,254m ³ 증가	
				소 계
				25,244
				33,923
				8,679

⑧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설정 변경명세
기. 철립부지

사 업 명	구 分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규 모(m ³)	비 고
			평조	변경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산100	180	180	0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산102	247	0	-247	
345kV	신중주분기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회곡리 산36	0	486	+486	
	승전선로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회곡리 산36-1	0	183	+183	
	건설사업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회곡리 산37-1	0	170	+170	
		소 계	427	1,193	+766	

사 업 명	구 分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규 모(m ³)	비 고
			평조	변경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산102	180	180	0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회곡리 산37	247	0	-247	
345kV	신중주분기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회곡리 산36	0	486	+486	
	승전선로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회곡리 산36-1	0	183	+183	
	건설사업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회곡리 산37-1	0	174	+174	
		소 계	427	1,193	+766	

2. 154kV 추부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① 사업부지 평정 : 154kV 추부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성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등대로 411③ 변경사유 : 사업부지 평등에 따른 사업기간, 전원설비, 사업면적 변경
(사업 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원료)④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2007.04 ~ 2011.04(49개월)	2007.04 ~ 2012.06(63개월)	14개월 증가

나. 전원설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주변압기 : 15/22kV 15/22MVA 34.5MVA 개폐장치 : 11kV GS7500로 25kV GS7500로 설립 : 1171 선로길이 : 3.3km	주변압기 : 15/22kV, 40MVA x 2부위 개폐장치 : 11kV GS7500로 25kV GS7500로 설립 : 1071 선로길이 : 3.3km	17) 취소

다. 사업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66,190㎥	91,437㎥	1,091㎥ 증가

⑤ 토지 증감표

(단위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지목	사유지 국·공유지	사유지 국·공유지	계
임	76,411	1,271	77,682
전	5,095	1,945	7,040
담	2,185	212	2,397
파	576	0	576
도	314	690	1,004
천	0	814	814
구	0	550	550
점	283	0	283
계	84,864	5,432	90,346
		85,893	5,544
		91,437	+1,091

⑥ 농지편입 변경내역 : 해당사항 없음

⑦ 산림편입 변경내역
가. 철립부지

지목	소재지	규모	비고
임	충청북도 을진군 군서면 산자리 산27-1	338	337
임	충청북도 을진군 군서면 산자리 산22-12	247	376
임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신령리 산9-4	284	0
계		869	763
		106㎥ 감소	

⑨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지목	소재지	규모			도지 등 의명세			소유권 이의의 권리
		변경전	변경후	비고	지적	소유자	⑦ 권리자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부지면적	⑤ 평지면적	⑥ 단지면적	⑦ 주소	⑧ 성명	⑨ 종류
임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산자리 신27-1	4,273	5,207	934㎡ 증가					⑩ 비고 (부득 권리)
임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산자리 신22-12	2,681	2,703	22㎡ 증가					
임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신9-4	421	428	7㎡ 증가					
임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신24-3	4,354	4,526	172㎡ 증가					
계		11,729	12,864	1,135㎡ 증가				

⑧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명세

가. 철립부지

사업명	구분	시설의 구분	소재지		규모(m ²)	비고
			당초	변경		
15kV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산자리 신27-1	338	387	+49	
추부변전소 및 관리송전선로	변경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산자리 신22-12	247	387	+129	
고압선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신9-4	284	0	-284	

나. 선하부지

사업명	구분	시설의 구분	소재지		규모(m ²)	비고
			당초	변경		
15kV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산자리 신27-1	4,273	5,207	+934	
추부변전소 및 관리송전선로	변경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산22-12	2,681	2,703	+22	
고압선		충남 금산군 추부면 산자리 신9-4	44	106	+62	
건설사업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신24-3	4,354	4,526	+172	

충청북도 공고 제2010-856호**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비 고
정보통신공사업 (제430098호)	(주)광성전기 대표 송세호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201-1번지	2010.12.6	신규등록

충청북도 공고 제2010-857호

장암~지경간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보상계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사가 시행하는 장암~지경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 장암~지경간 도로확포장공사
- 사업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 사업기간 : 2009. 7월 ~ 2011. 4월

2. 대상 토지 및 물건의 위치

공사명	구간		연장(km)	사업시기
	시점	종점		
장암~지경간 도로확포장공사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341-1	괴산군 청천면 지경리 216-1	L=2.3km	2009. 7월

3. 토지 및 물건조서의 열람

- 열람기관 : 충청북도 균형건설 도로과(220-4214), 괴산군 건설과(830-3497)

4. 보상시기 : 2009년 7월이후**5.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Rightarrow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Rightarrow 손실보상 협의 \Rightarrow 수용재 결(협의 불성립 시) \Rightarrow 공탁

6. 보상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며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이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금액으로 보상합니다

7. 기타 : 사업시기 및 보상은 추진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10-858호

충청북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예고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진천 배티 성지 [鎮川 梨峙 聖地]」 등을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도지정문화재 지정예고

가. 진천 배티 성지 [鎮川 梨峙 聖地]

- (1) 지정종목 : 기념물
- (2) 문화재명 : 진천 배티 성지 [鎮川 梨峙 聖地]
- (3) 소 재 지 :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360번지 일원
- (4) 소 유 자 :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5) 관 리 자 : 천주교청주교구(대표 교구장 장봉훈 주교)
- (6) 수 량 : 3개소(조선교구신학교지, 무명 순교자 14인 묘, 삼박골 모녀 순교자 묘)
- (7) 조성연대 : 1850~1860년대
- (8) 관리단체 : 천주교청주교구

나. 청주 여산송씨 정려각(淸州 磺山宋氏 旌閭閣)

- (1) 지정종목 : 기념물
- (2) 문화재명 : 청주 여산송씨 정려각(淸州 磺山宋氏 旌閭閣)
- (3)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181-3외
- (4) 소 유 자 : 여산송씨 천곡파 종종
- (5) 관 리 자 : 여산송씨 천곡파 종종
- (6) 수 량 : 3동(송상현 및 한금섬·이소사 충렬각, 밀양박씨 효열각, 영일정씨 효부각)
- (7) 조성연대 : 조선후기
 - 송상현 및 한금섬·이소사 정려각 : 1704년 건립, 1954년 중수
 - 밀양박씨 효열각 : 1795년 건립, 1925년 중수
 - 영일정씨 효부각 : 1841년 건립
- (8) 관리단체 : 여산송씨 천곡파 종종

다. 진천 강세황 묘소(饋川 姜世晃 墓所)

- (1) 지정종목 : 문화재자료
- (2) 문화재명 : 진천 강세황 묘소(饋川 姜世晃 墓所)
- (3) 소재지 : 충북 진천군 문현면 도하리 50-10
- (4) 소유자 : 강태근 외 1인
- (5) 관리자 : 강중처(姜重處)
- (6) 수량 : 1박
- (7) 조성연대 : 1791년

라. 충주 석보군 묘소(忠州 石保君 墓所)

- (1) 지정종목 : 文化財資料
- (2) 문화재명 : 충주 석보군 묘소(忠州 石保君 墓所)
- (3) 소재지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46
- (4) 소유자 : 전주이씨 석보군파 종종
- (5) 관리자 : 전주이씨 석보군파 종종
- (6) 수량 : 일원(一園)
- (7) 조성연대 : 당초 1447년(경기 양주 미아리) / 이장 1958년(충주 소태면)
- (8) 관리단체 : 전주이씨 석보군파 종종

2. 지정사유

가. 진천 배터 성지 [饋川 梨峙 聖地]

- O 배터 성지(梨峙聖地)는 한국천주교 중요성지로 한국 천주교 신학적인 조선교구신학교 터가 위치하고 있다. 현제 배터 성당[梨峙聖地]을 위시한 주변 지역은 천주교 박해기에 교우촌(敎友村)으로 형성되었으며, 순교자(殉教者) 묘들이 이 곳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순교자(殉教者) 묘(무령 순교자 14인 묘와 6인 묘, 순교자 유(劉)데레사 부부(夫婦) 묘, 삼박풀 묘, 순교자 묘)가 있는데 14인 묘와 삼박풀 묘 모녀 순교자 묘를 지정 범위에 포함하였다.

- O 체양암(崔良業) 신부와 포랑스 선교사(宣教師)들의 성당(聖堂) 경사제관 소재지(활동 거처)로 연간 3만 명 이상의 순례자(巡禮者)들이 찾는 중요한 순례지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청주 어산송씨 정려각(淸州 磯山宋氏 旌閭閣)

- O 임진왜란 때 동래성을 지키다 순절한 송상현과 그 후손들의 가계 내에서 배출된 열녀, 효부의 정려로서 그 내역과 정려를 내리게 된 경위를 이장 기록되고 실물로 전존하여 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중의 역사적 실체를 잘 보여준다.

다. 진천 강세황 묘소(饋川 姜世晃 墓所)

O 조선 후기 대표적인 문人口이자 평론가인 표암(彭菴) 장세황(姜世晃)의 묘로 그의 묘소가 어떠한 경위로 이곳에 자리하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석(石)과 향로석(香爐石)을 세우고 좌우로 묻인석(文人石), 망주석(望柱石) 각 1조를 갖춘 배체형(配置形態)은 묘소의 형태와 석물들로 별다른 특징이 없는 조선시대 일반형 묘소이나, 장세황의 인물사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정하여 보존하려는 것이다.

라. 충주 석보군 묘소(忠州 石保君 墓所)

- O 석보군(石保君) 이복생(李福生)은 조선 정종의 9번제 아들로 태어났으며 효성과 우아가 돈독한 대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던 인물이다. 그의 묘소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경기도 양주군에서 현 위치로 이장한 가운데에 속물은 쉽게 옮길 수 있는 비석과 장명동 만을 이장하였으나 왕자와 무덤으로 갖추어야 할 석물은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역사적으로 오래되다는 않았지만 조선시대 왕실의 제작 품질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3. 문화체보호구역 지정

가. 진천 배터 성지 [饋川 梨峙 聖地]

- (1) 지정종목 : 기념물
- (2) 문화체명 : 진천 배터 성지 [饋川 梨峙 聖地]
- (3) 소재지 :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360번지 일원
- (4) 보호구역 토지명세

소재지	토지의 표지			지정면적 (m ²)	도지소유자
	지번	지목	기적(㎡)		
360	대	1,002	499	(제)천주교 유자재단	천주교 신학교
365-1	전	512	13	제단	성동
366-2	목장 옹지	479	2	제단	성동
산76	임	23,142	247	(산림청)	무령 순교자 14인묘
산85-9	임	4,565	1,071	(제)천주교 유자재단	천주교 신학교
백곡면 옹덕리	삼박풀 묘녀				
산75-10	임	365	365	(제)천주교 유자재단	성동
계	6필지	30,065	2,197		

나. 청주 역사 속 정려각(淸州 靖山宋氏 旌閭閣)

- (1) 지정종목 : 기념물
- (2) 문화체명 : 청주 역사 속 정려각(淸州 靖山宋氏 旌閭閣)
- (3) 소재지 :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181-3번
- (4) 보호구역 토지명세

4. 예고기간

가. 도보 공고일부터 30일간

토지의 표시		지정면적 (m ²)	토지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성명	주소
177-10 대	682	682	청창열외[1]	청주 흥덕 수의동 177-10
181-3 사적	76	76	여산송재천국파종증	
181-4 대	338	338	정황순	청주 흥덕 현대대우A, 807-1204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181-6 전	192	정황순	청주 흥덕 현대대우A, 807-1204
	181-8 목자 용지	200	200	여산송재천국파종증
	182 사적	53	53	여산송재천국파종증
	183 사적	17	17	송은섭
	196-1 도로	12	12	서장내 이학현 부단리 국(건설부)
계	8필지	1,570	1,570	

다. 진천 강세황 묘소(鎭川 姜世晃 墓所)

- (1) 지정종목 : 문화재자료
- (2) 문화체명 : 진천 강세황 묘소(鎭川 姜世晃 墓所)
- (3) 소재지 :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기리 510-10
- (4) 보호구역 토지명세

토지의 표시		지정면적 (m ²)	토지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성명	주소
문백면 도하기리	510-3 과	6,369	371	강태근 서울시 성북구 청계 266-188
	510-10 과	1,421	1,421	강태근 서울시 성북구 청계 266-188
	신95-1 임	1,554	476	강태우 충북 진천 문백 도하기리 233
계	3필지	9,344	2,268	

5. 특기사항
- 가. 지정해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도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나 해당 문화체가 소재한 시·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연락처
- (1)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 (043) 220-3832
○ FAX : (043) 220-3819
○ 주소 : (우 360-765)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 (2) 관할 시·군
○ 청주시 문화관광과 전화 (043) 200-2218
○ 충주시 문화체육과 전화 (043) 850-6631
○ 진천군 문화체육과 전화 (043) 539-3624

충청북도 공고 제2010-862호

도시가스공급시설 추가공사 및 취소 계획 공고

도시가스사업법 제 18조의3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1권역(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괴산군) 및 제4권역(진천군, 음성군)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추가공사 및 취소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생활경제과(220-3252)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청북도지사

I. 2010년도 추가 공사계획

1. 제1권역(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괴산군)

가. 청주시

NO	구간명	압력	관경(A)	연장(M)	공급			
					대상수요가	전수	공사시기	공급시기
소계				400	81			
1	모총 484-2번지 인입공사	저압	100	60	크린토피아	1	12월	12월
2	우암 330-18번지 인입공사	저압	80	40	원룸	12	12월	12월
3	율량 1081번지 인입공사	저압	80~50	40	원룸	18	12월	12월
4	가경 412-3번지 인입공사	저압	100~50	40	주택, 일반	3	12월	12월
5	모총 123-27~123-28번지 배관공사	저압	200~50	50	주택	6	12월	12월
6	복대 849-10~852-20번지 배관공사	저압	100~50	40	원룸, 일반	17	12월	12월
7	봉명 220-12번지 인입공사	저압	80~50	40	원룸	15	12월	12월
8	봉명 517번지 인입공사	저압	80~50	40	주택, 상가	3	12월	12월
9	봉명 2862번지 인입공사	저압	90~63	50	주택, 일반	6	12월	12월

나. 증평군

NO	구간명	압력	관경(A)	연장(M)	공급			
					대상수요가	전수	공사시기	공급시기
소계				70	33			
10	증평 초중 594-8~604-2번지 배관공사	저압	100	45	원룸	32	12월	12월
11	증평 초중 547-4번지 인입공사	저압	80	25	상가	1	12월	12월
계 (제1권역)				470	114			

시군행정

청주시 고시 제2010-124호

청주 도시관리계획(북문로3가 엘리시아APT) 지형도면고시

1.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49-1번지 일원에 청주시고시 제2010-116호(2010. 11. 19.)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엘리시아APT)되어 의제처리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주시청 도시계획과(☎043-200-27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10일
청 주 시 장

■ 청주 도시관리계획(북문로3가 엘리시아APT)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780	-	9,780	
제2종 일반주거지역	5,397	감)62	5,335	사업구역내 구적오차 정정
일반상업지역	4,383	증)62	4,445	사업구역내 구적오차 정정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기 정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9	북문로3가 유진 마젤란APT	상당구 북문로3가 49-1번지 일원	-	증) 9,780	9,780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

□변경

5) 건축물에 대한 용도·형태·내구·설계 등에 관한 규제

□기정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m ²)	기 성	변경부	비 고
19	북문로3가 헬리티아 APT	상당구 북문로3가 49-1번지 일원	-	(주) 9,780	9,780	구역별 청 변경

3) 도로 결정(변경) 조서

도 면 표 시 번 호	기 수 모	기 능	면 적	기 점	종 점	위 치	사 용	주 요 형 태	비 고
기정	대로 3 2	25m 주간선 도로	884	대구 11 북문로2700 대구 11 북문로2700	2.27	일반 도로	제1차	일반 도로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대로 3 2	25m 주간선 도로	884	대구 11 북문로2700 대구 11 북문로2700	2.27	일반 도로	제1차	일반 도로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중로 2 29	15m 보조간 도로	884	보조간 23 북문로2705-15	2.27	일반 도로	제1차	일반 도로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중로 3 76	12.5 국지 도로	115	국지 29 북문로2705-20 북문로2733 도로	8.43	일반 도로	제2차	일반 도로	- 제2종 일반주거지역

4)기구 및 흙의 규모

□기정

도 면 표 시 번 호	기 수 모	면 적 (m ²)	화 재 부 수	화 재 위 치	화 재 면적(m ²)	비 고
1	기구1	9,780	①	북문로3가 49-1번지 일원	8,744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기준
			②	북문로3가 51-1번지 일원	475	
			③	북문로3가 47-3번지 일원	547	도로용지 (기부체납)
			④	북문로3가 28-1번지 일원	14	도로용지 (기부체납)

□변경

구 분	용 도	허 용 용 도	비 고	제 작 내 용 도
기정	기존 용도	기존 용도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다음과 같은 용도를 갖는 일정한 양의 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다음과 같은 용도를 갖는 일정한 양의 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동주택과 그린생활시설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주현지법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다음과 같은 용도를 갖는 지역으로서 각각의 용도 기역에 적합한 관례를 제외
변경	기존 용도	기존 용도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하는 평도는 650% 이하로 제한 - 일반상업지역 - 공동주택과 그린생활시설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주현지법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대 평도는 20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하는 평도는 15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은 20% 이하로 제한 주현지법에
				기기용도 이외의 용도

충주시 고시 제2010-100호

충주 도시계획시설(공원:호암근린공원) 조성계획 지형도면승인 및 고시

충청북도고시 제2010-274호로 결정 고시한 충주호암근린공원의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 주 시 장

1. 충주 도시계획시설(공원:호암근린공원) 조성계획 지형도면승인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 표 시 번 호	면 공 원 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호 암 근 린 공 원	근린공원	충주시 호암동 일원	976,860	-	976,860	내무부고시 제342호 (56.08.21)	조성계획변경 •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 변경 • 어린이놀이터 신설

○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총괄)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율 (%)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976,860.00	-	976,860.00	100.00	26,906.75	증 721.51	27,628.26	
조경시설	1,230.00	-	1,230.00	0.13	-	-	-	
휴양시설	4,514.50	-	4,514.50	0.46	-	-	-	
유희시설	19,880.00	증 638	20,518.00	2.10	150.00	-	150.00	
운동시설	53,573.00	증 2,072	55,645.00	5.70	15,553.41	증 721.51	16,274.92	
교양시설	69,483.00	감 1,598	67,885.00	6.95	9,786.47	-	9,786.47	
편의시설	8,295.00	-	8,295.00	0.84	1,361.87	-	1,361.87	
관리시설	16,115.00	-	16,115.00	1.65	55.00	-	55.00	
도로 및 광장	86,255.80	감 370	85,885.80	8.79	-	-	-	
녹지 및 기타	717,513.70	감 742	716,771.70	73.38	-	-	-	

○ 시설별 세부 결정조서

시설 구분	도로표지 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건축면적(m ²)			
			기장	변경	변경부	기장	변경	변경부	기장	변경	변경부	
총 세	976,860.0	-	976,860.0	26,906.75	51,242.12	27,628.26	52,160.86	-	69,483.0	14,588	67,885.0	9,766.47
1. 시설부지	258,346.3	증712	260,088.3	26,906.75	51,242.12	27,628.26	52,160.86	-	52,443.0	24,588	50,845.0	6,835.00
조정 소계	1,230.0	-	1,230.0	-	-	-	-	-	-	-	-	4,955.23
시설 1-1 - 조경유지처	400.0	-	400.0	-	-	-	-	-	-	-	-	1,342.21
1-2 - 조경유지처	630.0	-	630.0	-	-	-	-	-	-	-	-	4,738.75
2 - 낸수	200.0	-	200.0	-	-	-	-	-	-	-	-	1,192.10
3 - 가축피크닉장	3,300.0	-	3,300.0	-	-	-	-	-	-	-	-	2,016.22
27-1 - 임간유지소	15.0	-	15.0	-	-	-	-	-	-	-	-	1,561.57
27-2 - 임간유지소	52.0	-	52.0	-	-	-	-	-	-	-	-	2,737.17
27-3 - 임간유지소	47.0	-	47.0	-	-	-	-	-	-	-	-	-
27-4 - 임간유지소	15.0	-	15.0	-	-	-	-	-	-	-	-	35.10
27-5 - 임간유지소	15.0	-	15.0	-	-	-	-	-	-	-	-	15.75
28 - 수변유지소	350.5	-	350.5	-	-	-	-	-	-	-	-	1,600.00
29 - 수변무대	720.0	-	720.0	-	-	-	-	-	-	-	-	2,625.00
30 -												-
31 -												-
32 - 어린이놀이터	-	630.0	630.0	-	-	-	-	-	-	-	-	-
운동 소계	53,573.0	증2,072	55,645.0	15,553.41	31,290.78	16,277.92	32,209.52	-	1,230.0	1,230.0	1,230.0	1,361.87
시설 6 - 스포츠센터	6,200.0	-	6,200.0	3,955.00	15,196.00	-	-	-	1,270.0	1,270.0	1,270.0	240.00
8 - 베니스광	3,600.0	-	3,600.0	-	-	-	-	-	1,000.0	1,000.0	1,000.0	320.00
11 - 체력단련장	956.0	-	956.0	-	-	-	-	-	455.0	455.0	455.0	150.00
12 - 인공암벽체	100.0	-	100.0	-	-	-	-	-	800.0	800.0	800.0	150.00
13 - 문화체육시설	42,717.0	증2,072	44,789.0	11,583.41	16,094.78	12,303.92	17,013.52	-	1,000.0	1,000.0	1,000.0	150.00
14 - 청년수영장			2,560.86	3,733.78	-	-	-	-	580.0	580.0	580.0	100.00
15 - 대목체육체관			4,690.18	5,871.17	-	-	-	-	180.0	180.0	180.0	49.87
16 - 소공연장			1,037.39	889.83	-	-	-	-	80.0	80.0	80.0	12.00
17 - 체육민관	7,784.0	증2,072	9,856.0	3,300.00	5,600.00	4,021.51	6,518.74	-	-	-	-	-

구	분	동	읍	면	현	면적 (m)	면적 (m ²)	기	점	종	전	비 고
기점	신체로	-	21	1.5	56.0	84.0	호암동 산75-2길, 산체로1	호암동 산75-2길, 산체로1				
기점	신체로	-	22	1.5	17.0	25.5	호암동 621-4번, 산체로1	호암동 621-4번, 산체로1				
기점	신체로	-	23	1.5	84.0	126.0	호암동 산75-2길, 산체로2	호암동 산75-2길, 산체로2				
기점	신체로	-	24	1.5	11.0	16.5	호암동 산75-2길, 산체로23	호암동 산75-2길, 산체로23				
기점	신체로	-	25	1.5	62.0	93.0	호암동 산75-7도, 산체로1	호암동 산75-2길, 산체로1				
기점	신체로	-	26	1.5	179.5	269.3	호암동 621-4번, 산체로25	호암동 621-4번, 산체로25				
기점	신체로	-	27	1.5	14.5	21.8	호암동 산73-21길, 산체로26	호암동 산73-21길, 산체로26				
기점	신체로	-	28	1.5	58.5	87.8	호암동 621-2길, 산체로27	호암동 621-2길, 산체로27				
기점	신체로	-	29	1.5	25.0	37.5	문화동 3889길, 산체로17	문화동 3889길, 산체로17				
기점	신체로	-	30	1.5	11.0	16.5	호암동 산24-13길, 산체로18	호암동 산24-13길, 산체로18				
기점	신체로	-	31	1.5	25.0	37.5	호암동 산124-11도, 산체로3	호암동 산124-11도, 산체로3				
기점	신체로	-	32	1.5	25.0	37.5	호암동 산22-7길, 산체로4	호암동 산22-7길, 산체로4				
기점	신체로	-	33	2	337.0	674.0	호암동 586-15길, 산체로3	호암동 586-15길, 산체로3				
기점	신체로	-	34	1.5	57.5	86.3	호암동 산105-5길, 천양재	호암동 산105-5길, 천양재				
기점	신체로	-	35	1.5	58.5	87.8	호암동 산 105-5길, 산체로4	호암동 산 105-5길, 산체로4				
기점	신체로	-	36	1.5	94.5	141.8	호암동 산 105-5길, 산체로4	호암동 산 105-5길, 산체로4				
기점	신체로	-	37	1.5	64.0	96.0	호암동 산 105-5길, 산체로4	호암동 산 105-5길, 산체로4				
기점	신체로	-	38	3.5	10.0	35.0	호암동 산76-8도, 소로2-3	호암동 산76-8도, 소로2-3				
기점	신체로	-	39	2.5	39.0	97.5	호암동 677-7길, 바지터센터	호암동 677-7길, 산체로40				
기점	신체로	-	40	1.5	16.0	24.0	호암동 산76-7길, 산체로4	호암동 산76-7길, 산체로4				
기점	신체로	-	41	1.5	270.0	405.0	호암동 산76-7길, 산체로40	호암동 산76-7길, 산체로40				
기점	신체로	-	42	1.5	153.5	230.3	호암동 677-7길, 산체로41	호암동 677-7길, 산체로41				
기점	신체로	-	43	1.5	46.0	69.0	호암동 677-7길, 산체로41	호암동 677-7길, 산체로41				
기점	신체로	-	44	1.5	20.0	30.0	호암동 산76-5도, 소로2-3	호암동 산76-7길, 산체로43				
기점	신체로	-	45	1.5	71.0	106.5	호암동 산76-5도, 소로2-3	호암동 산76-7길, 산체로41				
기점	신체로	-	46	1.5	51.5	77.3	호암동 689마소로2-4	호암동 689마소로2-4				
기점	신체로	-	47	1.5	39.5	59.3	호암동 677-5도, 산체로45	호암동 677-5도, 산체로45				
기점	신체로	-	48	1.5	27.0	40.5	호암동 677-7길, 산체로45	호암동 677-7길, 산체로45				

2. 충주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승인고시도 : 개체생략

3. 관계도서는 충주시청 지역개발과(☎850-6114) 및 산림복지과(☎850-583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충주시 고시 제2010-101호

충주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고시

충주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제2준공업단지 조성사업/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부칙 제2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법률인『도시계획법』(법률 제2291호)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기간연장)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종류, 시행자, 사업기간

사업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자	사 업 기 간		비 고
			당 초	변 경	
제2준공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계획사업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충주시장	1994. 12. 17. ~ 2010. 12. 31.	1994. 12. 17. ~ 2012. 12. 31.	근거법령: 국토계획법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계획사업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충주시장	1990. 12. 17. ~ 2010. 12. 31.	1990. 12. 17. ~ 2011. 12. 31.	근거법령: 도시계획법

2. 사업의 위치 및 내용,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등 권리명세(변경없음) : 계재생략**3. 관계도서를 충주시 지역개발과(☎850-6131/850-616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청원군 고시 제 2010-135호

청원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2-2번지 일원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대성개발(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 동법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59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10일
청 원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3	대성개발(주)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산업형	옥산면 환희리 2-2번지 일원	42,395	-	42,395	청원고-76 (2000.09.09)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分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2,395	0	42,395	100.00	
공업용지	22,315	증)1,292 감)1,292	22,315	51.37	
공공시설용지	9,544	증)1,100 감)1,100	9,544	10.16	
녹지용지	10,536	증)192 감)192	10,536	38.47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획 지					획지면적 변경비율	
		획지 (구획용지)	면 적(m ²)		비 율(%)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BL	42,395m ²	공업용지	22,315	22,315	51.37	51.37	11.58%	
		공공시설용지	9,544	9,544	10.16	10.16	23.10%	
		녹지용지	10,536	10,536	38.47	38.47	3.64%	
계	42,395m ²	합계	42,395	42,395	100.00	100.00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위 치 (획지번호)	구 分	계 획 내 용	
공업용지	용도	지정 용도	공장 및 부대시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용 적 율	150%	
	높 이	4층이하, 20m이하	

2. 군관리계획 지형도면(변경) 승인조서 : 상기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도보게재 생략

청원군 고시 제2010-138호

하천정비 시행계획(변경)의 고시

하천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외천천 하천정비공사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청 원 군 수

1. 사업개요(공사기간변경)

하천명	공사명	사업개요							비고	
		공사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시점	종점	축제	호안	기타	착공	준공		
외천천	외천천하 천정비공 사	현도면 시목리 59-5	현도면 시목리 627-9	500	246	배수 통관 2개 소	2010. 6.14 (변경) 2010. 6. . (당초)	2011.0 4.16 (변경) 2011. 2. . (당초)	축제 및호 안	손실보상은 2개사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값 으로 보상.

2.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사항없음)

시행자 : 청원군수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을곡로 27(북문로 1가 171-3)

3.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재난안전과 비치
(변경사항없음)

4. 실시설계도서 : 재난안전과 하천담당부서 비치(변경사항없음)

5. 사업비 및 조달 계획 : 국비 전액 확보시행(변경사항없음)

6.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우리 군 관리(변경사항없음)

7. 폐천부지 발생예상 면적 : 없음.(변경사항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필연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 소	과 계 임			비 고				
	면	리			지적	면적면적				성 명	주 소	관리관계					
						하천외	하천내 (경.유.인)	계									
1	현도	시목	596-5	전	4,116	684	1,948	2,632	오용수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5							
2	*	*	596-4	전	1,498	108	1,382	1,488	오정길	청원군 부용면 노호리 202							
3	*	*	593	전	2,668	111		111	오용수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5							
4	*	*	596-3	전	1,438	1,438		1,438	국	건설교통부							
5	*	*	594	전	2,413	762	155	917	이춘위	대덕구 신단진동 125-28							
6	*	*	596-1	전	1,160		1,160	1,160	오삼룡	청원군 부용면 동곡리 170							
7	*	*	595	전	1,273	491	109	600	오한규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441							
8	*	*	590	전	4,258	1,758	872	2,630	오창규	청원군 부용면 노호리 50							
9	*	*	597-3	전	3,238	411	2,827	3,238	오희봉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479							
10	*	*	597-1	전	709	709		709	오봉길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235							
11	*	*	589	전	830	515		515	오봉길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235							
12	*	*	588	전	2,340	1,342	998	2,340	오창규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421							
13	*	*	587	전	1,140	765	375	1,140	오봉길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235							
14	*	*	586-4	전	5,768	420		420	김영준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412							
15	*	*	584-3	전	1,018	1,018		1,018	오선진	대전시 은구 운장동 108-5							
16	*	*	584-4	월	13	13		13	국	국토해양부							
17	*	*	585-2	월	552	552		552	국	국토해양부							
18	*	*	586-3	월	5,580	1,553		1,553	국	국토해양부							
19	*	*	584-2	월	1,812	484		484	국	국토해양부							
20	*	*	586-1	전	1,845	789	737	1,526	오윤관	청원군 부용면 노호리 55-2							
21	*	*	585-1	전	1,745	1,745		1,745	오희인	노모리							
22	*	*	656-1	도	1,013	327		327	국	건설부							
23	*	*	627-9	첨	118,654	2,303		2,303	국	건설부							
24	부증	노호	423	전	205,632	1,609		1,609	국	건설부							
합계					19,905	10,583	30,468										

청원군 고시 제2010-139호

청원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 407-9번지 일원에 가축분뇨자원화(액비)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하고,
- 동법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59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10일
청 원 군 수

1.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4	수질오염 방지시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부용면 등곡리 407-9번지 일원	-	증) 1,171	1,171	-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4	수질오염 방지시설	면적: 1,171m ² (신설결정)	○ 가축분뇨의 자원화(액비)생산을 위한 가축 분뇨자원화시설 신설

2.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 상기 결정조서와 같음.

3. 군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계재생략 (청원군 도시과에 비치)

청원군 고시 제2010-140호

오창저수지 주변 및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예정지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에 조성중인 오창저수지 주변의 군관리계획 입안구역과 오창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 및 고시하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청 원 군 수

1.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가. 제한사유 : 오창저수지가 완공될 경우 수변경관이 양호한 저수지 주변으로 개발행위로 인해 오창저수지의 환경·경관 등이 오염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고, '오창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통하여 오창 성산 저수지 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오창저수지 주변의 군관리계획 입안구역 및 '오창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나. 제한지역

- 당초 : 오창읍 성산리, 용두리, 복현리, 후기리 일원
- 변경 : 오창읍 성산리, 용두리 일원

다. 제한면적 (변경)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면적(km^2)	4.241 km^2	0.841 km^2 (제2종지구단위계획 입안구역 : 0.417 km^2 ,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예정지 : 0.424 km^2)	감 3.4 km^2

- 변경사유 : 오창저수지 주변에 대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 추진 중이고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충청북도로부터 승인(2010.2)됨에 따라 구역 밖의 불필요한 사유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민원해소를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 입안 구역과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구역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라. 제한기간 : 2009.04.24 ~ 2012.04.23. (3년)

※ 단,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거나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준공될 경우 해당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될 경우 제한기간을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마. 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가

바. 개발행위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 : 별첨

사.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계재생략

3. 관련도서를 청원군 도시과(☎043-251-359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

1. 기존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재건축·개축 및 대수선
2. 토지의 합병 및 분할
3. 기 건축허가(신고포함)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4. 가설건축물중 공사용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
5.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개발행위 중 종전의 규모 범위내에서 시설물의 설치
6.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개별법률에 의하여 이미 허가, 승인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 다만,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되지 않은 건축물은 제외함.
7.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규모 범위내 행위
8.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9.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의 부지내에서의 건축(동일용도에 한함.) 및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함.)
10.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
 - 가. 부속건축물의 증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하되,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 나.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1)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 (2)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 다.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 (2)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 (3)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주택지 조성사업
 - 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개발행위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11.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그 밖에 경미한 행위
 - 가. 임야에서의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농지에서의 조림, 육림은 제외)
 - 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1) 상기 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청원군 고시 제2010-141호

청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예정지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고시

청원군 강외면 공북리, 상정리 일원에 추진예정인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기간 변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청 원 군 수

1.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가. 제한사유

- 청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시 향후, 용도 지역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농림지역, 관리지역내에 대하여
-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사유재산권의 선의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이 필요함.

나. 제한지역 : 청원군 강외면 공북리, 상정리 일원

다. 제한면적

구 분	총 제한지역	1차 제한지역 (오송신도시관련)	2차 제한지역
면 적(km ²)	3.346	2.381	0.965
비 율(%)	100.0	71.0	29.0

라. 제한기간 (변경)

- 1차 제한지역(2.381km²) : 2005.12.19 ~ 2010.12.18
- 2차 제한지역(0.965km²) : 당초 2008.04.19 ~ 도시개발구역 지정시까지(3년이내)
변경 2008.04.19 ~ 2010.12.18
- 변경사유 :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의 추진이 지난하고 1차 제한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2010.12.18. 해제됨에 따라 2차 제한지역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동시에 해제될 수 있도록 제한기간을 변경코자 함.

마. 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허가

바. 개발행위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

- 기존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재축
- 토지의 합병 및 분할
- 기 건축허가(신고포함) 사항의 변경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 가설건축물중 공사용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
-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개발행위 중 종전의 규모 범위내에서 시설물의 설치
-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개별법률에 의하여 이미 허가, 승인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 다만,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되지 않은 건축물은 제외함
-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규모 범위내
- 신규 편입지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시작일(2008. 4. 12) 이전에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2차 제한지역에 한함)

사.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3. 관련도서를 청원군 도시과(☎043-251-359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영동군 고시 제2010-63호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영 동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북 영동읍 계산리 485-1번지외 24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경부선 심천~영동간 보은가도교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규 모	시 점	종 점	비 고
중로3-6호	L=101.7M(B=12M)	영동읍 계산리 485-1	영동읍 계산리 894-3	

4. 사업시행자

- 주 소 : 대전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1번지
- 성 명 : 영 동 군 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12. 12. 30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불임

7. 기타 관련서류는 영동군청 도시개발과(☎043-740-3372)에 비치하고 있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관계인 주소 성명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m ²)	평법 면적 (m ²)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읍면	리	번지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영동	계산	485-1	학	5,507	88.8		충청북도 교육감			
2	"	"	487-5	도	7	7	"	국 건설부			
3	"	"	487-3	도	3	3	"	국 건설부			
4	"	"	488-7	도	30	30		충청북도 교육감			
5	"	"	488-1	철	1,071	175.6		국 철도청			
6	"	"	882-65	철	4,238	247.1		국 철도청			
7	"	"	882-23	대	248	5.4		김희석	서울 용산구 후암동339-4 장우오피스텔3층-제16		
8	"	"	519-6	대	159	7		김형완	부용리 177		
9	"	"	519-3	도	179	131.3		국 철도청			
10	"	"	519-4	임	197	5.6		국 재무부			
11	"	"	519-8	도	76	22.6		영동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관계인 주소 성명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m ²)	평법 면적 (m ²)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읍면	리	번지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12	영동	계산		도		73.3		국 국해부			
13	"	"	511-12	대	13	0.1	"	국 재무부			
14	"	"	874-4	구	78	7.2	"	국 농림부			
15	"	"	874-5	도	36	8.8		국 농림부			
16	"	"	520-1	도	36	0.1		건설부			
17	"	"	895-5	구	1,224	166.7		국 농림부			
18	"	"	527-2	철	5,906	91.1		국 국해부			
19	"	"	532-4	도	25	1.5		화주철	계산리532		
20	"	"	532-1	대	445	9.5		화주철	계산리532		
21	"	"	531-3	도	7	7		국 건설부			
22	"	"	532-2	도	73	63.6		국 건설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관계인 주소 성명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			권리의 종류및내용
	읍면	리	번지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3	영동	계산	533-1	대	119	6.6		박덕립	계산리533			
24	"	"	533-2	도	96	37.5	"	국 건설부				
25	"	"	894-3	도	446	159.5	"	국 건설부				
							이	하	여	백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관계인 주소 성명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권리의 종류및 내용
	읍· 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영동	계산	533-2도	오수	침개	2개		국(건설부)				
2			531-3도	오수	팬홀	3개		국(건설부)				
			531-3도	수목	감나무	1주		국(건설부)				
3			531-3도	오수	팬홀	1개		국(건설부)				
4			496-1학	조명등		1개		충청북도(교육감)				
5			894-3도	오수	침개	1개		국(건설부)				
	"		우수	침개		1개						
6			895-5구	상수도	제수변	1개		국(농림부)				
7			527-2월	상수도	제수변	1개		국(국 해부)				
8			527-2월	소화전		1개		국(국 해부)				
9			465-1학	수목		14주		충청북도 교육감				
10			882-23	주택		22.8m ²	계산리882-23	김희석				
11			"	주택,정포		72.7m ²	"	"				
12			519-6	일반음식점		37.7m ²	계산리519-6	김영완				
			"	표지판	가로등	1식						
13			520-3	주택,정포		47.4m ²	계산리520-3	오대화				
14			520-3	주택		29.5m ²	계산리520-3	오대화				
			"	수목		5주						
15			882-23	창고		23.7m ²	계산리882-23	김희석				
						이	하	여	백			

청주시 공고 제2010-1036호

등록공인공고

청주시 공인조례 제6조에 의거 등록 및 재등록한 공인을 청주시 공인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청주시장

1. 사용일자 : 2010. 12. 3
2. 등록사유 : 인증기 추가 구입
3. 공인명 및 인영내역

등록공인명	인 영	비 고
청주시흥덕구 사직제1동장인		

제천시 공고 2010-1295호

제천 도시계획시설(학교:세명대학교)사업 완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한 세명대학교 제6차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었음에 따라, 같은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세명대학교)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제 천 시 장

1. 사업 개요

사업의 명칭	위치	도시계획 시설종류	사업규모 (m ²)	사업기간	비고
세명대학교 6차 설치 사업	제천시 신월동 544-1외 28필지	학 교 (세명대학교)	A=109,738	'05. 6. 3 ~ '10. 12. 31	

2. 사업 시행자

주 소 : 충북 제천시 신월동 557번지

성 명 :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 이사장 김엽

청원군 공고 제2010-1102호

군계획시설(소로2-79호,80호,90호)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청원군 오창 군계획시설(소로2-79호, 소로2-80호, 소로2-90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동법 제9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청 원 군 수

1. 군계획시설사업 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소로2-79호, 소로2-80호, 소로2-90호)사업
 - 명 칭 : 오창 복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사업시행 위치 : 청원군 오창읍 복현리 460번지 일원
- 사업시행 규모 : 도로신설 L=284m, B=8m (면적 2,484 m²)
 - 소로2-79호 : L=175m, B=8m, 소로2-80호 : L=94m, B=8m, 소로2-90호 : L=15m, B=8m

2.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을곡로 27(북문로1가 171-3번지)
- 성 명 : 청원군수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2011. 12. 31

4.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가. 일 시 : 도보 게재일로부터 21일간
- 나. 장 소 : 청원군청 도시과(☎251-3594), 오창읍사무소(☎251-466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물 명세 : “별첨”

6. 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는 청원군청 도시과, 오창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공사명 : 오창 복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지 적	편 입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분할지번)
	읍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관계	
1	오창	장대	434	구	2,689	21	농수산부	국				
2	오창	복현	458-1	구	16,312	41	농림부	국				
3	오창	복현	460	도	8,529	89	건설부	국				
4	오창	복현	110	잠	1,421	155	최근식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330 제 원아파트 101동 404호	오창농업 협동조합	청원군 오창면 창리 2-1	지상권	
									오창농업 협동조합	청원군 오창면 창리 2-1	근저당권	
5	오창	복현	109-7	잠	31	31	청원군	청주시 북문로1가 171-3				
6	오창	복현	108-11	대	251	251	청원군	"				
7	오창	복현	108-7	대	456	3	노광석	청원군 오창면 복현리 197				
8	오창	복현	108-6	대	304	142	청원군	청주시 북문로1가 171-3				
9	오창	복현	108-9	잠	64	64	청원군	"				
10	오창	복현	109-6	잠	324	324	청원군	"				
11	오창	복현	109-11	도	72	72	모본영	으창읍 장대리 424				
12	오창	복현	98-4	도	1,968	300	청원군	청주시 북문로1가 171-3				
13	오창	복현	109-12	도	2	2	모본영	으창읍 장대리 424				
14	오창	복현	107-4	대	57	57	청원군	청주시 북문로1가 171-3				
15	오창	복현	107-6	대	73	73	청원군	"				
16	오창	복현	107-7	대	116	116	청원군	"				
소계					32,869	1,741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지 적	편 입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분할지번)
	읍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관계	
17	오창	복현	107-3	대	1	1	청원군	청주시 북문로1가 171-3				
18	오창	복현	106-11	대	40	40	청원군	"				
19	오창	복현	106-9	도	45	45	청원군	"				
							밀양박씨두정(공 파유증증손증)					
20	오창	복현	101-8	도	2	2	청원군	청주시 북문로1가 171-3				
21	오창	복현	106-13	대	89	89	청원군	"				
22	오창	복현	101-7	전	71	71	청원군	"				
23	오창	복현	105-3	대	15	15	청원군	"				
24	오창	복현	102-3	대	61	61	청원군	"				
25	오창	복현	103-3	전	113	113	청원군	"				
26	오창	복현	104-4	답	13	13	우안박씨 상서공파종중	청주시 내덕동 94-21				
27	오창	복현	103-5	구	4	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8	오창	복현	104-3	구	4	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9	오창	복현	91-6	구	10	1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0	오창	복현	91-3	답	390	235	주식회사대상	청주시 신봉동 170-8	국민연금 관리단	청주지사	압류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청주지점)	가입류		
								주택사업 공제조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청주지점)	가입류		
								을성군		입류		
								제천시		압류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지적	면 입 면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분할지번)
	읍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관계	
									청주세무서		임류	
									청주시 흥덕구청		임류	
									옥천군		임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한국신원리증 사(송복지사)	서울 중구 다동 33	기압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		기압류	
									충청북도 청원군		임류	
31	오창	복현	91-5	도	839	39	청원군	청주시 복운동1가 171-3				
32	오창	복현	86-3	답	2,985	1	이병열	청원군 오창면 모정리 180-1	오창농업 협동조합	청원군 오창면 창리 2-1	근저당권	
									오창농업 협동조합	청원군 오창면 창리 2-1	지상권	
소계					3,824	40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지장을)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공사명 : 오창 복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지장을현황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읍	리	지번	지장을영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성명	주 소	주소	성명	권리관계
1	오창	복현	108-6	창고	시멘블럭, 슬레트	63.8	m ²	청원군	청주시 복운동1가 171-3			
2	오창	복현	109-9	창고1	시멘블럭, 슬레트	21.6	m ²	청원군	-			
3	오창	복현	109-9	창고2	시멘블럭, 슬레트	22.1	m ²	청원군	-			
4	오창	복현	107-4	차고	폴리스틱, 양철지붕	26.3	m ²	청원군	-			
5	오창	복현	106-11	주택	조립식	55.9	m ²	청원군	-			
6	오창	복현	106-11	창고	시멘블럭, 슬레트	22.1	m ²	청원군	-			

기 타

충청북도교육청공고 제2010-332호

**충청북도 교육 · 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교육 · 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교직원 · 학부모 및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1.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등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응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응시수수료 환급 근거를 마련하고,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과정 이수에 해당하므로 응시수수료를 무료화하여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력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 함

-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인정고시 수수료 10,000원 중 고등학교 출
업학력 인정고시 수수료만 징수함

충청북도 조례 제 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12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교육감(첨조 :

충무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청탁별 의견(전·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주 소 : 361-70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번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 전 화 : (043)290-2526, FAX : (043) 290-2741-2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충청북도 교육·체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체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현급기간에 응
시 응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현급절차 및 방법
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장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계 경 안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생략) ② (생략)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 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나.<단서 신설>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④ 공고한 현금기자에 응시 의사 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고한 현금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 하여야 한다.	
구 분	총 류	기준	수수료	비 고	(단위 : 원)
1.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2. 교육부원용보조 3. 경정고시수수료	1. 고등학교 전학·현학·체정수수료 가. 일반사항 나. 선거평가, 포함된 사업 1. 고등학교 평정학점교부 응시수수료 2. 성적증명서 3. 학력증명서 4. 체육학점증명서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300 25,000 35,000 10,000 300 300 300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12조 (수수료 <신설 1986.2.17>) 고시료 및 고시에 따르는 각종 중형서의 교부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37조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성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청수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성인을 위한 것 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청수할 수 있다.
- ③ 제27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등학교 출입학허락 검정고시 규칙】

제17조 (고시료 등) 고시료 및 고시에 따르는 각종 중형서의 교부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7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적 사항	성명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제44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중령 등 수수료 청수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충청북도교육감 기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0-447호**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보은~내복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3. 노선명 : 국도 19 호선(남해~홍천)

4. 사용개시구간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88-3(도)부터

충북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364, 365(답)까지(L=16.4km)

5. 사용폐지구간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24-11(도)부터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655-4(도)까지(L=24.3km)

6. 중요경과지 : 보은군 보은읍, 산외면

7. 전용구간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88-3(도)부터

충북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364, 365(답)까지(L=16.4km)

8. 개시(폐지)일 : 2010. 12. 22.

9. 비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
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